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511
- 발 의 자 : 양민규 의원 외 19명
- 발 의 일 : 2020년 5월 25일
-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자체가 시민에게 공공자원을 무상대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 소유 공용차량을 서울시민과 공유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공용차량 이용대상자의 범위 및 이용신청방법, 준수사항 등을 정함(안 제3조, 제5조, 제12조).
- 공용차량의 이용신청, 승인 및 통지 절차와 운전자의 자격을 정함(안 제6조, 제10조).
-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 사항 및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 정함(안 제13조,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2020. 6. 3. ~ 6. 10.)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을 서울시민과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 시키고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려는 것임(안 제1조).
- 본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이용대상자의 범위, 이용자의 공용차량 이용의 범위 등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음.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을 서울시민과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 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제2조(정의)	- “공용차량”, “공용차량 공유사업”, “이용대상자”, “이용자”, “운전자”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인 사람으로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등의 해당하는 사람을 이용대상자로 정함.
제4조(이용자의 공용차량 이용의 범위)	- 공휴일 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함.
제5조(이용신청 방법)	-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면, 인터넷 또는 어플리케이션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함.
제6조(이용의 승인 등)	- 이용신청 이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함.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 공용차량 공유이용을 위하여 신청자·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정보 수집 요청받은 자는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시장은 공용차량 공유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제9조(개인정보의 제공)	- 공용차량 신청자·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주민부서, 경찰청 및 복지부서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이용자 및 운전자의 자격)	-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 또는 운전자의 요건을 규정함.
제11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 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에 따른 신분 확인과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제1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후 이용 목적, 안전사고 예방, 유류비, 범칙금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
제13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조치)	-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이용 금지와 5일 이내 구체적인 조치 사항 및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제14조(이의신청)	- 이용승인 등에 대한 불승인 및 취소, 이용 정지 등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함.
제15조(공용차량 공유사업 지원)	- 시장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부칙	- 공포일부터 시행

- 현재(2020년 5월 기준) 공용차량 이용과 관련하여 경기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시행예정중에 있음.

〈공용차량 공유 이용 관련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경기도	광주광역시
운영시기	2016년 조례제정 및 시행	2016년 조례제정 및 시행
주당이용/차량대수	20/73	13/24
신청방법	전용사이트 구축(14억원)	시 홈페이지
현재운영상태	코로나19로 운영중단(1.27)	코로나19로 운영중단(1.27)

- 다만, 공유경제의 정책방향이 나눔카 등 민간교통 영역을 침범하여 공유경제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노력과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행정국은 공유가치 중심의 정책방향 변화에 맞추어 서울시가 교통부문에서 무엇을 공유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공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민과 종합적인 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1항은 물품을 대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는 취약계층(「사회적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물품에 해당하는 공용차량을 서울시 및 사업소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휴일 등에 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대부) ①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무상 대부) 제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 다만,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적용 기관, 이용 대상자의 범위의 적정성, 이용 신청과 승인 및 출고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한 과도한 행정력 부담은 없는지와 공유차량(소카 등)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시 상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용신청(이용자)	승인 및 출고(서울시)	입고 등 기타(서울시←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토요일 ◆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팩스, 서면, 인터넷(앱) 등 ※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활용(서울시) - 사용일 15일전부터 1일전까지 ◆ 자격 : 이용일 현재 만 26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교통사고로 중상 이상의 이력이 없고 음주운전경력이 없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기본정보 및 운전이력(교통사고경력 등) 확인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정보조회 의뢰 등 ◆ 출고시 이용자준수사항 등 제반사항 고지 후 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활동 금지 -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 비용은 자기부담 - 교통사고시 차량손해부담금 및 배상한도 초과금 부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상태(사고 및 고장 등) 확인 후 입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비 등 정산 ※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비용은 이용자 부담

○ 아울러, 장애인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나눔카 사업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하위 40%),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장애인(가족포함)에게 문화바우처(연 9만원)를 통한 무상사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중복 혜택 여부에 대한 논의와 본 조례 제정보다는 바우처 확대를 통해 차량 공유 경제 활성화라는 방안과 비교 검토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2012년 9월 도시화로 인해 실종된 우리의 오랜 전통인 공유 문화를 회복해서 서울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한 바 있으며, 승용차 공유는 공유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주요한 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시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음. 서울시는 이를 위해 승용차 공동이용 사업자를 공모하고 운영계획, 시민 서비스 및 공공성 확보방안 등의 계획 검토 후, 2개의 민간 업체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후, 2013년 2월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나눔카’라는 명칭으로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 행정국은 장애인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요금할인 제도를 기 시행중인 나눔카 사업이 이용대상의 폭, 사업추진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에서 우월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조례사업에서 요구한 목적과 취지가 대부분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동 조례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기 시행중인 나눔카 사업의 지원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사업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나. 세부 내용 검토

1) 정 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동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용차량” 및 “이용대상자” 등의 의미를 규정하여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적용상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3조에 따른 시민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운전자”란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이용자를 위하여 이용자가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운전하도록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다만, 조례안 제2조 제1호에서 “공용차량”을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속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와 소속기관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경우 관리 담당자와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시 운용가능차량 보유(총 244대)

◆ 본청 총무과 배차용 차량(29대) 및 사업소 업무용차량(215대)

구분	계	본청(총무과)	사업소
승용차	158	21	137
승합차	86	8	78

2) 이용자의 범위(안 제3조)

- 안 제3조는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인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들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한부모 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다자녀(3자녀) 가정의 구성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안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동 조문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용차량을 공휴일에 무상이용하게 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유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용대상자의 범위가 적정한지 여부와 관련 법령과의 상충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 제4호

-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물품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19.7.2.신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 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첫째, 안 제3조제5호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을 이용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용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둘째, 안 제3조제6호에서는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예외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용대상자의 범위가 자의적으로 적용 및 운영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와 조례의 명확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아닌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이용자의 공용차량 이용의 범위(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시장이 공휴일 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의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을 제공하거나 여가 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안 제4조(이용자의 공용차량 이용의 범위) 시장은 공휴일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서울시 공용차량의 “이용자에게 이동수단 및 여가활동으로만 공용차량을 이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동수단의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여부와 공용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을 제한하는 등 관리방안에 대해서 세밀한 준비와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이동 목적지에 따라 공공장소 입출고 장소 및 차종 관리 등에도 세부적인 운영방안과 지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이용신청 방법(안 제5조)

- 안 제5조는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인터넷 또는 어플리케이션 신청시스템과 방문 및 팩스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5조(이용신청 방법)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시장에게 서면, 인터넷 또는 어플리케이션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방문 또는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용대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이용자 또는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 날의

15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전부터 1일(그날 오후 1시까지를 말한다)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이용신청의 기간을 서울특별시청 게시관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이는 공용차량 이용신청자의 자격 검증 및 운전면허 조회 등 적격심사 절차를 통해 기본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절차라고 할 것임.

○ 한편,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공용차량 이용신청자에 대한 적격조회 등의 기간을 이용일 1일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 등의 1일내에 확인·운영 가능여부 및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국에서는 이용신청자의 자격 검증 및 운전면허 조회 등은 경찰청 등과 업무 협조 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용일 3일전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신청시스템이 부재한 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 효과성에 비해 과도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동 조례안의 1일전 신청은 경기도의 시스템 구축시스템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찰청 등 검증기관에서 접속 및 검증결과를 입력·공유를 전제로 한 것임.

※ 경기도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됨.

구 분		경기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시행년도		2016	2016	2020(준비중)
이용가능 차량대수	본청	73대	24대	10대
	사업소	37대	-	-
평균 이용대수		20대	13대	-
신청방법		서면 및 전용사이트	시청홈페이지	서면, 도청홈페이지
신청마감일		전일 13시	4일전	3일전
무인화장기 유무		○ (14억 소요)	X	X

- 한편, 서울시 및 사업소에 등록된 공용차량이 다른 자치단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조례 시행을 위해서는 서면 및 방문 접수 운영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의 간소화 및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대책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 공용차량 이용 신청 등의 기능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와 시스템 연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안 제5조제1항 중 일부 단어에 오탈자가 있는 바, 적절한 단어로의 수정(제조⇒제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이용의 승인(안 제6조)

- 안 제6조는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정보(운전 면허 정보) 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용 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이용의 승인 등) ① 시장은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신청 등을 한 사람은 같은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운전면허 정보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이용신청 등을 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순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인원 및 목적지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그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 후에도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 등을 한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1.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자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 계층

③ 시장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 오후 6시까지 이용신청을 한 자에게 이용승인 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1명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같이 생활하는 다른 가족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에 대하여 월 2회(공휴일등이 2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이용한 사람의 추가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 등이 있는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용신청 등의 기간 내에 이용신청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용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이용자 기본정보와 운전이력(교통사고경력 등) 확인 및 승인 등을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정보조회의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바, 현재 서울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과 경찰청 조회시스템에 연동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신속한 조회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6조제2항 각호에서는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발생한 경우 그 승인의 순서를 정하고 있는 바, 이용 우선순서 대상자가 적정하게 규정되었는지 여부와 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안 제6조제2항에서 시장은 이용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이용순서를 정하고, 탑승인원 및 목적지에 따라 배치하는 차종을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자가 이용가능한 차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차선택권을 강화해 주는 방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이용대상자의 이용횟수를 월2회로 제한하고, 1회 이용을 최대 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휴일 등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경우, 1인 이용대상자의 장기간 이용으로 이어져 다른 신청인의 이용 제약으로 혜택의 대상이 줄어들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제6항에서는 이용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취소에 따른 시민의 불편 발생과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용 취소에 따른 이용제한 등 관련 대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안 제7조~제9조)

- 안 제7조는 시장이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용차량 이용 신청자 및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안 제9조는 제7조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주민부서, 경찰청 및 복지부서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용차량 공유이용을 위하여 신청자·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안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안 제9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자·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주민부서, 경찰청 및 복지부서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 동 조문은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바, 공공부문 등에 있어서 시민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의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로 보여짐.
- 다만,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등록번호 정보 등을 말함.
 - ※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나,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서는 제24조의2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행정국은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로 정보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할 정책과 현황을 살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이용자 및 운전자의 자격(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시장이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 또는 운전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이용자 및 운전자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사람이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일 것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만 26세 이상인 사람일 것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로 중상 이상의 인적 피해 이력이 없고 음주운전 법규 위반 이력이 없는 사람일 것.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용 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공용차량은 용도의 특수성과 이용목적이 특정된 공공재적 성격을 띤 차량이므로 이용자 및 운전자에게 엄격한 자격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안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자격요건으로 “이용하려는 날 현재 만 26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운전 경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나이를 제한 요인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안 제10조제1항제6호에서는 “최근 2년간 교통사고로 중상 이상의 인적 피해 이력이 없고 음주운전 법규위반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교통사고 중상이상의 인적 피해 정도를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에서 이를 판단하고 검증할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8) 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절차(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시장이 공용차량을 출고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차량상태 확인 및 점검 확인서 작성→차량 출고)와 입고에 따른 절차(차량상태 확인 및 점검 확인서 작성→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차량 출고)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1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
3.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4. 차량 출고

② 공용차량의 입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
3. 차량 입고

③ 무인화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는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안 제11조제4항에서는 차량관리부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용차량 입출고 확인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불분명한 바, 공용차량의 입출고에 따른 차량의 파손·손상·고장 등의 확인을 위해 확인담당자를 특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공용차량 공유 이용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3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입출고 확인자가 상이한 바, 입출고 차량 점검에 따른 관리 및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허술한 관리로 이어질 개연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구 분		경기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시행년도		2016	2016	2020(준비중)
이용가능 차량대수	본청	73대	24대	10대
	사업소	37대	-	-
평균 이용대수		20대	13대	-
입출고 확인자		부서 직원 및 자원봉사직원	당직자	미정

9)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시 조치사항(안 제12조~안 제13조)

-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공용차량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준수사항 위반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p>안 제1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2. 운전을 하는 이용자나 운전자는 제10조에 따른 이용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받지 않은 자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용자는 이용자가 수행하는 영업을 위한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

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손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8. 이용자는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이용자 및 운전자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안 제13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조치) ① 시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거나, 영리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이용 정지

2.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3. 제6조제5항에 따른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4. 제12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용차량은 개인 소유 대상이 아닌 서울시의 재산에 해당하는 바, 공공재의 성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유지·관리감독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여 공용차량의 유지·사고 등의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안 제12조제4호에서는 이용자가 수행하는 영업을 위한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리 활동 여부에 대한 판단과 분쟁의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차량 내부 영상 녹화장치의무 설치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12조 제5호에서는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통행료 및 과태료, 범칙금 등의 발생과 징수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차량운영시 경제속도를 준수하고, 연료주유시 70% 이하로 주유하여 연비 향상 등을 꾀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공용차량의 유지관리 및 예산절감에도 행정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12조제7호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자동차 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고 발생에 따른 서울시의 보험료의 할증에 따른 부담액 증가와 민사소송 발생 등에 따른 소송부담의 부정적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타시도의 사고 발생율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료 납부액 및 보험금 규모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구 분		경기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시행년도		2016	2016	2020(준비중)
이용가능 차량대수	본청	73대	24대	10대
	사업소	37대	-	-
평균 이용대수		20대	13대	-
평균 교통사고 발생율 ('19년)		0.5%	0.1%	-

- 한편, 안 제13조에서는 제12조 이용자의 준수사항의 위반에 따른 이용 정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의 입법취지와 목적 달성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짐.
- 다만,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조치는 제재적이고 징벌적 성격을 가진 행위이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단계적 심의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준수사항 위반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세심한 운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10) 이의 신청(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공용차량의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인, 이용승인의 취소, 이용정지 등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용여부 및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임.

안 제14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 등에 대한 불승인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취소
3. 제13조에 따른 이용 정지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안 제14조의 경우는 이용 정지, 이용승인의 취소 등에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이를 반영한 근거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소명자료제출 및 의견진술권을 규정한 입법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위반사실의 공표)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